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 공소 검사·군검사 지휘권 신설 등〉

- 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84호)
-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81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 공소수행 검사·군검사 지휘권 신설 (김용민의원안 제7조제4항 신설)	4
2.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김용민의원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8
3. 공소시효의 정지 특례 신설(이성윤의원안 제25조 신설)	11
※ 참고자료	13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13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14

I . 제 안 경 위

1. 이성윤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8. 14.

다. 회 부 일 : 2025. 8. 18.

2. 김용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5. 8. 21.

다. 회 부 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성윤의원안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 절차를 마치고 그에 의한 수사를 진행 중임.

그런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특별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가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2. 김용민의원안

현행법에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함. 또 특별검사는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음.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사건의 수가 많아서 수사 완료일 무렵에는 같은 날에 여러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등 공판 일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라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인하는 등 소송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아울러,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검은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움.

따라서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해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검사가 수사에 의해 확인한 내용을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지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 제2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 공소수행 검사·군검사 지휘권

신설(김용민의원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김용민의원안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 김용민의원안은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가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신설하려는 것임(김용민의원안 제7조제4항 신설).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파견 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는데, 최근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이첩 자체를 무효로 보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인하고 있고,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경우 「군사법원법」 대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달리 되기 때문에¹⁾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를

1) 「**군사법원법**」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이첩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유지 중인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두어 차질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검찰청법」²⁾과 「군사법원법」³⁾은 검사 또는 군검사가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 ①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각각 검찰총장과 소속 검찰단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검사·군검사의 직무 및 이의제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특별검사와 검찰총장 및 소속 검찰단장 간 지휘권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조항 위치와 관련하여, 김용민의원안과 같이 제4항에 미이첩 사건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경우 현행법 제7조제3항4)의 파견 간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개정안의 경우에도 파견 간주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

(김용민의원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김용민의원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략)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u>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在廷)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임(김용민의원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 특별검사는 현행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이 있고⁵⁾, 특별

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 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함6).

현행법상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7)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 7)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 발췌

1.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와 피고인 2의 업무수첩과 진술(이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등'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가. 피고인 1에 대한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
 -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생략)
 - 라) 박◆혜 정부의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

- 이에 개정안은 상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별
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죄형법정주의, 유추·확장해석금지, 공소장일본주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공소권 남용,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소송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공소시효의 정지 특례 신설(이성윤의원안 제25조 신설)

현행	이성윤의원안
<신설>	제25조(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 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 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

- 이성윤의원안은 현행법상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안 제25조 신설).
- 「형사소송법」⁸⁾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24년 같은 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범인뿐 아니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

8)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성윤의원안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범인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자 하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법 률 명	본회의 의결일	공포일·시행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4.15.	2022.4.2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5.21.	2018.5.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11.17	2016.11.22.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9.3.	2012.9.21.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9.	2012.2.2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0.6.29.	201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2.17.	2007.12.2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1.23.	2007.12.10.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5.6.30.	2005.7.2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3.11.10.	2003.12.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2.26.	2003.3.15.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1.11.22.	2001.11.26.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9.20.	1999.9.30.

* 역대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는 [참고자료2] 참조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2021. 4. 2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1건이 있음.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에너지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임 명 절 차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지체없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2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좌동)	(좌동)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민주통합당 의 특검후 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특검 후보 추천 위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더불어민주 당·국민의 당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정의 의 의원모 의 의원모 일이 대한 변협 추천 4인 중 특 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교섭 단체 합의로 법 원 행정 처 장 및 대 한변협 회 장이 각각 2인씩 추천 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더불어민 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 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대통령이 소속된 정 당의 정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 섭 단체가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 더불어민 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 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오피스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일반	자격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 검사 법조경력 변호사 또는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①15년 이상 법 조 경 력 판사·검사· 변호사 ②15년 이상 변호사 자 격 보유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 종사 또는 대학 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	(좌동)	(좌동)
	결격사유	①공무원 ②법 시행 전 1년6월 이 내에 공무원 이었던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진적 있는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졌던 자 ④공무원 결격자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특검임 명전 1년 이내에 당적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좌동) +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	(좌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 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직에 있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좌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특별 검사보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구분	조폐공사사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②특별검사의 2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1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10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2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이내) ③대통령의 4인 이내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특별 수사관	특별검사가 사건당 12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6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사건당 16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2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5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8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권한	①수사협조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인 이내, 파견공무원 10인 이내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2회 이상 불 응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좌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위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좌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3인 이내, 파견공무원 3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60인 이내, 파견공무원 10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3명 이상을 공수 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명 이상을 공수 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0분 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수사 기간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6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승인) (최장 10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70일 ③연장: 30+2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 보고) (최장 125일)	①준비기간: 7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0일 (대통령승인) (최장 4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35일 ③연장: 20일 (대통령승인) (최장 55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5일 (대통령승인) (최장 4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공소 유지 가능 명시) ②원칙: 9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국 회 보고)	(좌동)	①준비기간: 20일 (수사 진행 가능 명시)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국 회 보고)

구분	조폐공사사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70일)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40일)
재판 기간	①1심: 3월 ②2심: 2월 ③3심: 2월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①1심: 3개월 ②2심: 2개월 ③3심: 2개월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작동)	(작동)	(작동)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중간수사발표 규정없음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통지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언론브리핑 가능 (피의자실 외의 수사과정)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재판 관할	서울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형사소송법」 상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작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벌칙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직무수행 방해: 5년이하 징역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에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④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④ 직무수행 중 지 득 정 보 소속관 보고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수사최장기간: 170일

※ 특검 최대 규모: 총인원(267인), 특검(1인), 특검보(6인), 파견검사(60인), 파견공무원(100인), 특별수사관(100인)